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445호

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을 공고합니다.

>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

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

## 1. 개정 이유

'22.10.6일 발표한 「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」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기준 제정근거 신설 (안 제6조)
- 나.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·통보 면제 (안 제26조)
- 다. 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 (안 제38조)
- 라. 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 (안 제39조)

- 마.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 (안 별표 7)
- 바.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최종 부과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 (안 별표 8)
- 사. 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 (안 별표 9)

## 3. 의견 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2.1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기업회계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(기업회계팀)
  - 주소: (04520)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
  - 전화: 02-2100-2693
  - 팩스: 02-2100-2678
  - 이메일: skmagic21@korea.kr
- 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)>지식마당> 법령정보>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